

제안 설명

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
(군민안전과)

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입니다.

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,
『**고령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』에 대하여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및 복구에 동참하는 자율방재단원에
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
입니다.

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 명기입니다.

-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,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명기 하였습니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명기 하였습니다.
- 현행 조례 제 10조 1항에 따라, 자율방재단장에게 받은 활동확인서를 근거로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기 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말씀드린

「**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」에
대하여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일

군민안전 과장 홍 영 복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고령군 지역지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군민안전과장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무팀 심사필

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5. . .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및 복구에 동참하는 자율방재단 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 신설(안 제9조)
 - 일반직공무원 9급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지급(최대 8시간/일)
(특별재난지역 근무 시 소집수당 1일 8시간 초과 지급 가능)
 - 활동확인서를 근거로 소집수당 지급

3. 개정안 : 붙임

4. 기 타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 60조
- 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'24. 11. 21. ~ '24. 12. 11.(특이사항 없음)
- 다. 예산관련사항 :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- 바. 기타 관련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 초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소집) ① ~ ③ :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소집) ① ~ ③ : (<u>현행과 동일</u>)</p> <p>④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 초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.</p>

< 관계 법령 > 자연재해대책법

- 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**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**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1.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
 2.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
 3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
-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-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이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- 예산 편성 내역

년도	2022년	2023년	2024년
예산 편성액	36,700,000원	38,700,000원	36,500,000원

4. 작성자 : 군민안전과 지방공업서기보 김병근

<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군민안전과	
연 락 처	054-950-6643